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부합금액 발생 시 이월기부 허용〉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1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9.
3. 회 부 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해당 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하 “불부합금액”이라 함)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일 30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후원회에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과 별도로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하 “불부합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가 불부합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u> ④ <u>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부합금액은 다음 연도의 연간 기부한도액에 포함</u>
<u><신설></u>	

③・④ (생략)	하지 아니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현행법¹⁾은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현행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 모금한도(§12)
중앙당	50억원
국회의원	1억 5천만원
시·도 지방의회의원	5천만원
구·시·군 지방의회의원	3천만원
대통령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1억 5천만원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 지방의회의원후보자	5천만원
구·시·군 지방의회의원후보자	3천만원
지자체장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50%

1)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 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 기한²⁾》

구 분	회계보고 기한(\$40)
정 당	다음 연도 1월 31일 다음 연도 2월 15일 선거일 후 30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다음 연도 1월 31일 선거일 후 30일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후원회	7월 31일 다음 연도 1월 31일 선거일 후 30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	경선일 후 30일 다음 연도 1월 31일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선거일 후 30일 선거일 후 40일 다음 연도 2월 15일

※ 해당 연도의 공직선거 실시여부, 회계보고의 주체(중앙당, 시·도당, 후보자 등)에 따라 회계보고 기한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회계보고는 선거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약 30일에서 4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정치자금법」

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하 생략)

그러나, 일부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인해 후원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예금잔액 불부합³⁾ 사유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정치자금회계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중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일 30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과 별도로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법령상 이미 일정한 유예기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임. 현행 「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일까지 기부가 가

3) 정치자금회계 실무 상 “불부합금액”은 단순히 통장과 회계보고서 상의 잔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를 의미함.

능하므로, 연말 은행 마감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중 불부합 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회계보고일 30일 전까지 해당 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계보고 기한이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로서도 회계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불부합 금액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 이전에는 불부합금액의 발생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종료 전 일정 시점에 각 후원회에 모금한도 초과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셋째, 개정안은 ①제12조제2항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후원회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이 발생한 경우에 중앙

4) 예를 들어, 정치자금시스템 내 알림창을 통해 모금한도 및 기부처분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후원금 모금한도 및 기부처분 기한(12.31.)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연간 모금한도액과 별도로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의 의미가 포괄적·추상적이므로 이월 기부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설정하고 후원금 모금 시 지체없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어 이월 기부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정치자금회계실무상 ‘불부합 금액’은 통장과 회계보고서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에도, 개정안에서 이를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으로 정의할 경우, 회계상 개념과의 불일치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에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계보고 시점까지 기부가 가능하므로, 연말이 지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회계보고 시까지 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